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9. .

외교통일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5월 31일, 박충권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2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2024. 8.1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
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4. 8.20.)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2024. 8.29.)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
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충권의원)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은 전체의 72%로 대부분 제3국 또는 한국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혼인하여 자녀를 출산해 가정을 이루고 있으며, 이 중 49%가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조사됨.

또한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23년 4월 기준 국내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초·중·고교 재학생 1,769명 중 중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은 1,257명으로 그 비율이 71.1%에 달하고 있음. 이처럼 중국 등 제3국에서 태어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은 외국에서 영유아기를 보낸 탓에 한국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집중적인 보충학습과 충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교육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만을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가족구성원이라도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은 이러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

이에 보호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의 원활한 정착을 돕는 한편, 통일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를 교육하는 학교의 운영경비 지원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사우)

□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한 법적 규율은 출생지에 따라 ① 북한출생, ② 중국 및 제3국 출생, ③ 남한출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① 북한출생 자녀는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으나,

② 제3국 출생 자녀의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③ 남한출생 자녀의 경우 북한에 주소·직계가족 등이 없어서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되지 못함.

□ 제3국 출생 탈북학생은 북한출생 탈북학생과 달리 한국어 구사 능력이 매우 낮아 입국 후 바로 정규학교로 편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정착하는 데 있어서도 북한출생 탈북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더 큰 실정임.¹⁾

이와 관련하여 국회 예산정책처는 같은 탈북학생이라 하더라도 교육

1) 국회예산정책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 평가」, 2016.10.

과정에 있어 중국어가 가능한 이중언어 강사 등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제3국 출생 탈북학생에 대한 장기계획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²⁾

또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제3국 출생 탈북학생에 대한 지원은 현행 법률 상 뚜렷한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정부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지원의 지속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 등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음.³⁾

현실적으로 제3국 출생 탈북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을 계속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 중 이들을 명시적으로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교육지원 대상을 “보호대상자의 자녀”로 규정하여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자녀를 제외하였는데,

헌법상 연좌제를 금지⁴⁾하고 있는 취지와 보호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의 원활한 정착을 돕는다는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고려할 때, 북한이탈주민인 부모가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자녀를 교육

2) 국회예산정책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 평가」, 2016.10.

3) 2014년부터 한겨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제3국 출생 탈북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현재 한겨레중·고등학교는 사실상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제3국 출생 탈북학생을 위한 지원시설로 운용되고 있는데, 동 학교는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학교이므로 합법성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한국법제연구원, 「북한이탈주민 지원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6).

4) **헌법 제13조**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바, 교육지원의 대상자를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① 북한출생, ② 중국 및 제3국 출생, ③ 남한출생 자녀 모두 지원 대상이 됨에 따라 출생지 및 우리말과 문화에 익숙한 정도에 따라 지원의 내용과 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건)

현실적으로 제3국 출생 탈북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을 계속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을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되,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관련위원회 의견 요지

없음

10.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8. .

제 안 자 : 외교통일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통일부장관의 교육지원 대상을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로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법 제24조제1항과 제3항의 교육지원 대상을 ‘보호대상자’에서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로 변경함(제24조제1항 및 제3항, 안 제24조제4항 삭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에 대한 수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보호대상자의 나이, 수학능력(修學能力),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가”를 “나이, 수학능력(修學能力), 출생지,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호대상자”를 각각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로 하며, 안 제24조제4항을 삭제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4조(교육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보호대상자의 나이, 수학능력(修學能力),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가</u>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교육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교육지원) ① ----- ----- ----- <u>나이, 수학능력(修學能力), 출생지,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가</u> ----- ----- ----- --.
② (생략)		② (개정안과 같음)
③ 통일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u>보호대상자의</u>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u>보호대상자의</u> 학력진단·평가, 교육정보관리, 교육, 연수 및 학습활동의 지원 등 <u>보호대상자</u>		③ ----- ----- ----- <u>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u> ----- ----- ----- <u>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u> ----- ----- ----- <u>북한이탈주민</u>

의 교육지원과 지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u><신 설></u>	④ 통일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자녀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교육받거나 해당 학교의 입학·편입학 및 졸업을 위한 준비 학습·보충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u>과 그 자녀</u>----- ----- -----. <u><삭 제></u>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보호대상자의 나이, 수학능력(修學能力),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가”를 “나이, 수학능력(修學能力), 출생지,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호대상자”를 각각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교육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보호대상자의 나이, 수학능력(修學能力), 그 밖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제24조(교육지원) ① ----- ----- ---- <u>나이, 수학능력(修學能力),</u> <u>출생지, 그 밖의 교육 여건 등</u> <u>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과</u> <u>그 자녀가</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통일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u>보호대상자의</u>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u>보호대상자의</u> 학력 진단·평가, 교육정보관리, 교육, 연수 및 학습활동의 지원 등 <u>보호대상자의</u> 교육지원과 지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 ----- <u>북한이탈주민과 그 자</u> <u>녀</u> ----- <u>북</u> <u>한이탈주민과 그 자녀</u> ----- ----- ----- <u>북한이탈주민</u> <u>과 그 자녀</u> ----- -----.